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고민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160

발의연월일: 2025. 2. 14.

발 의 자:고민정·문정복·김문수

박정현 · 김한규 · 송옥주

박홍근 • 주철현 • 박해철

강유정 • 오기형 • 오세희

박지원 • 이상식 • 안태준

이광희 • 황정아 • 박선원

서미화 의원(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대전에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교원이 교내 학생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의 직무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.

각 시·도교육청에서는 정신적 질환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휴·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만,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있음.

이에 정신적 질환에 따른 직무수행의 적절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

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,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휴직한 교 원이 복직을 할 경우에도 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학생과 교원을 두 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5까지 신설 등). 법률 제 호
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장의 제목 중 "소청"을 "소청 등"으로 한다.

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52조의2(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환교원(이하 "질환교원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(이하 "질환교원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정신건강의학 분야 전문가 2인 이상을 위촉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.
 -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.
 - ④ 그 밖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52조의3(질환교원의 심의)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질환 교원에 대한 직무수행 가능 여부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질

환교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

- ②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심의하여야 하며, 심의 결과를 교육감,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 및해당 교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 요청, 심의 절차 및 결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52조의4(결과 처리) ① 교육감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조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52조의5(복직 심의) ①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휴직하였던 교원이 복직하려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복직 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2조의3(질환교원의 심의) ①
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
은 질환교원에 대한 직무수행
가능 여부의 심의가 필요하다
고 판단되면 질환교원심의위원
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

- ②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심 의하여야 하며, 심의 결과를 교 육감,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의 장 및 해당 교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 요청, 심의 절차 및 결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2조의4(결과 처리) ① 교육감 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치 를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조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
제52조의5(복직 심의) ① 질환교

원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휴직하였던 교원이 복직하려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복직 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렁으로 정한다.